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물류단지개발사업 시 환지대상 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(안 제25조 개정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지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당초 물류단지시설에서 지원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물류단지시설 외에 지원시설에도 환지를 허용하되,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“가공·제조, 정보처리, 금융·교육·연구·업무시설 등”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허용
- 다만,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모든 지원 시설을 환지가 가능토록하고, 환지 방법 및 절차를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르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물류단지시설 외 지원시설로도 환지가 가능하게 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.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제47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25985호, 2015. 1. 6)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(“지방해양항만청” → “지방해양수산청”)을 반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관명칭을 현행화하여 법령 해석 상 혼란을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